# 손해배상(기)

[서울고등법원 2011. 4. 29. 2010나46123]



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외 1인) 【피고, 항소인】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2인) 【제1심판결】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8가합12798 판결 【변론종결】2011. 4. 8.

### 【주문】

- 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(1) 피고는 원고에게 280,157,014원 및 이에 대한 2010. 4. 1.부터 2011. 4. 29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.
- (2)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총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제1항의 (1)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】피고는 원고에게 336,016,862원 및 이에 대한 2010. 4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#### [이유]

】1. 기초사실

# [이유]

】1. 기초사실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